

의안번호	2210550
의 퇴 인	차규근의원
회 답 일	2025.6.30.
추계번호	25D2952

집단소송법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3조(대상사건)	집단소송 허가결정에 따른 제1심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함	의무규정
2	안 제58조(배심원의 수)	청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9인, 그 외 대상사건의 경우 7인의 배심원이 참여 피고가 변론준비절차에서 청구원인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음	의무규정/ 재량규정
3	안 제59조(예비배심원)	법원은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음	재량규정
4	안 제60조(여비·일당 등)	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원·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에게 여비·일당 등 지급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3조(대상사건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58조(배심원의 수)	
3	안 제59조(예비배심원)	
4	안 제60조(여비·일당 등)	

2. 상세 사유

- 집단소송 제1심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함
 - 추가재정소요 요인은 안 제53조에 따른 국민참여재판 기본운영비, 안 제

58조,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배심원후보자·배심원·예비배심원 일당 및
여비, 배심원 식비, 격리수당임

- 배심원 선정 절차는 각급 법원별로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로부터 일
정 수의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을 통지한 후, 배심
원 후보자 중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
 - － 배심원후보자에게 참석일수만큼 여비가 지급되고,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선
정될 경우 재판종료 시각에 따라 여비가 지급되며 식비, 격리수당 등이 지급됨
- 대법원은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에게 일당·여비로 재판당일 18시까지 12만
원, 21시까지 16만원, 24시까지 20만원, 다음날까지 이어질 경우 24만원
을 지급하고 있고, 배심원 식비는 6,00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며, 「국민
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제1항¹⁾에 따라 배심원·예비배심원·
피고인 등을 격리할 경우 1인당 1일 10만원의 격리수당을 지급하고 있음

□ 다만, 제정안에 따라 법원이 수행해야 하는 추가적인 국민참여재판의
건수 및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
- 안 제58조에 따른 사건 당 배심원의 수가 집단소송 청구금액이 10억원을
초과할 경우 9인, 그 외에는 7인, 피고가 변론준비절차에서 청구원인의 주
요 내용을 인정할 때에는 5인으로 상이하며, 예상되는 집단소송 건수 및
청구금액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
요를 추계하기 곤란함

1) 「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」 제53조(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) ① 재판장은 배심원 또는
예비배심원이 피고인이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
공정한 심리나 평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
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보호, 격리, 숙박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- 참고로, 2025년 예산 기준 대법원은 259건의 국민참여재판 실시를 전제로 15억 5,8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

[표 1] 국민참여재판 운영 사업 예산 편성 현황: 2025년

(단위: 백만원)

내역사업	예산
기본운영비 등	373
국민참여재판 해외자료수집	52
국민참여재판 교육 홍보	186
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일당 및 여비	852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조사 연구	25
국민참여재판 사법참여기획단 운영	70
합계	1,558

자료: 대법원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